



보도자료

- 건설경제팀 팀 장 손 태 락
사무관 신 보 미
- ☎ 02-2110-8735, 8740
- shinbm@moct.go.kr
- 5월 4일 배포(총3매)

- 5.7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건설업체 하도급 신고, 대폭 간소화된다

- 건교부·규제개혁기획단, 건설산업 규제개선 과제 확정 -

- 건설업체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계약내용을 발주자에게 반복하여 통보해야 하던 규제가 개선된다.
- 건설교통부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신고절차 일원화 방안이 건설산업 분야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되어,
-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(5.2)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, 금년중 관계법령 개정 등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- 그간 원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을 맺은 때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서,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계약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저가하도급 등 부당한 하도급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,

- '03년부터는 1억이상 공사의 원도급 계약시점부터 하도급 관련사항을 포함한 공사수행상황을 발주자에게 전산통보 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 정보망을 통한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추진하였다.

<현행 하도급계약 통보의무제도>

- 하도급계약통보제도(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)
 - 원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서 사본, 공사수량 및 단가가 명시된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저가하도급 예방이 목적
-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(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)
 - 건설공사수행상황과 참여자 현황, 하수급인 현황 등을 전산망을 통해 발주자에 통보하는 것으로 투명한 공사현황 관리가 목적

□ 그 결과 하도급 보호와 투명한 공사관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2개의 제도를 통해,

- 건설업체에게는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하도급과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.

□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규제개혁기획단은 현행 하도급 통보 관련 규제를 피규제자인 건설업체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여,

- 저가하도급 심사를 위한 하도급 계약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,
- 하도급계약서, 공사내역서,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사본 등의 첨부서류는 파일첨부나 팩스전송,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 중에서 업체가 선택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- 뿐만 아니라, 전산망의 개선을 통해 건설업체가 하도급액, 공사기간 등을 입력하면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발주자에게 통보되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.

- 건교부는 이같은 규제개선으로 연간 10만여건에 이르는 하도급 통보에 관한 건설업체의 금전적·시간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

- 앞으로도 건설산업 관련 규제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, 건설산업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